서울특별시교육청 국기 선양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관련 번호 597 제안연월일 : 2023년 4월 25일

제 안 자:교육위원장

1. 수정이유

○ 안 제5조는 국기 선양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사업비 지원 대상을 특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기 선양사업에 대한 지원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 정하고 있지 않아 자의적 예산 지원 및 해석상 논란을 발생시킬 우려 가 있음.

○ 따라서 국기 선양사업의 실제적 지원 대상과 범위 등의 기준을 보완 하는 것으로 수정함.

2. 주요내용

○ 국기 선양사업에 대한 지원대상과 지원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함 (안 제5조).

3. **참고사항** : 없음

서울특별시교육청 국기 선양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국기 선양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5조 중 "위하여"를 "위하여 교육기관에 다음 각 호의"로 하고, 같은 조 에 다음과 같이 각 호를 신설한다.

- 1. 국기 게양대 설치 사업지원
- 2. 국기 사랑하기 운동 및 국기 달기 운동 추진
- 3. 국기에 대한 교육활동
- 4. 그 밖에 국기 선양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수정안 대비표

원 안	수 정 안
제5조(국기 선양사업 지원) 교육감	제5조(국기 선양사업 지원)
은 국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	
존엄성을 수호하기 <u>위하여</u> 국기	<u>위하여 교육기</u>
선양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	관에 다음 각호의
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	
원할 수 있다.	
<u><신 설></u>	1. 국기 게양대 설치 사업지원
<u> <신 설></u>	2. 국기 사랑하기 운동 및 국기
	<u>달기 운동 추진</u>
<u><신 설></u>	3. 국기에 대한 교육활동
<u><신 설></u>	4. 그 밖에 국기 선양을 위해 교
	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
	<u>사업</u>

서울특별시교육청 국기 선양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대한민국국기법」에 따라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의 선양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소재 교육기관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국기에 대한 인식 제고와 애국정신 고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- 1. "대한민국의 국기"(이하 "국기"라 한다)란 「대한민국국기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4조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.
 - 2. "국기 선양"이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거나 국기의 존 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.
 - 3. "조기"(弔旗)란 조의를 표하기 위해 깃봉에서 기의 한 폭만큼 내려서 다 는 국기를 말한다.
 - 4. "교육기관"이란 서울특별시교육감(이하 "교육감"이라 한다)이 지도·감 독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과 그 소속 기관을 말한다.
 - 가. 「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 본청, 교육지원청, 직속기관 및 그 소속 기관
 - 나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 및 「유아교육법」 제2 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
 - 다. 「사립학교법」에 따른 학교법인
 - 라. 「공직자윤리법」에 따른 공직유관단체
- 제3조(교육감의 책무) 교육감은 교육기관에서 국기 선양 및 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- 제4조(국기 게양일 등) ① 법이 정한 국기 게양일 이외에 법 제8조제1항제5 호에 따른 교육기관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
 - 2. 그 밖에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
 - ② 교육기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기의 게양방법으로 국기를 게양하되, 제1항제2호에서 정한 날 중 조의를 표하는 날에는 조기를 게양한다.
- 제5조(국기 선양사업 지원) 교육감은 국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하여 교육기관에 다음 각호의 국기 선양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 - 1. 국기 게양대 설치 사업지원
 - 2. 국기 사랑하기 운동 및 국기 달기 운동 추진
 - 3. 국기에 대한 교육활동
 - 4. 그 밖에 국기 선양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- 제6조(교육) 교육감은 교육기관의 구성원이 국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존 엄성을 수호하도록 국기의 게양·관리·이용 방법 등을 교육할 수 있다.
- 제7조(국기의 점검·관리 등) ① 교육감은 교육기관의 장에게 국기·깃봉 및 깃대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·관리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 -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점검으로 국기의 오염·훼손이 확인되는 경우에 이를 즉시 교체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.
 - ③ 교육감은 법에서 정한 규격과 재질에 맞는 국기를 구매하여 사용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.
- 제8조(표창) 교육감은 국기 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 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·기관·단체 등에 대하여 「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·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」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.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